

재난피해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위기 극복방안 연구*

-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와 재난복구 이슈를 중심으로 -

Overcoming the Crisis in Disaster Area by Social Economy

- Focused on the Disaster Effects and Recovery Issues of Hebei Spirit Oil Spill -

Ju Ho Lee**, Jeong Hwan Bae***

Sun Moon Univ., Kalsan-ri, Tangjeong-myeon, Asan, Chungnam, Korea

Hanseo Univ., 46, Hanseo 1-ro, Haemimyun, Seosan, Chungnam, Korea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strategies for applying the purposes of social enterprises in overcoming crises in local communities caused by disaster damage. That is, this study attempted to derive implications on how to recover the local communities of disaster areas by the application of social enterpris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a disaster area has problems that the residents in the area are highly dependent on damage compensation and this weakens the vitality of economic activities, that dependency on external resources is high without efforts to support themselves for overcoming the crisis, and that expectation for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tends to be high. Thus, this study suggested special treatment of disaster areas in requirements for the certification of social enterprises so that disaster areas would overcome local cris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s, financial support through policies to support private fund raising and disaster management funds, and the need of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or the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s.

Key words: social enterprise, social economy, disaster, disaster recovery, Hebei Spirit oil spill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9-413-B00031).

** 1st author. Tel. +82-10-8794-5079. Fax. +82-01-4002-0000. E-mail. ejuo79@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Tel. +82-10-9230-4637. E-mail. baejh4637@naver.com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May. 7, 2014 / Revised: Jun. 26, 2014 / Accepted: Jun. 30, 2014

국문초록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목적으로서 지역문제 해결 차원에서 재난피해로 인한 지역공동체 위기 극복을 위한 적용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사회적 기업의 적용을 통한 재난피해지역의 지역공동체 회복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재난피해지역의 경우 피해주민들의 피해보상에 대한 의존도가 현격히 높은 상태에서 지역사회의 경제활동 활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위기극복을 위한 자활 노력이 없이 외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향,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경향을 보이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재난피해지역의 지역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에 재난피해지역에 대한 특례, 민간자금조달지원 정책 및 재난관리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에 부합하도록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함께 제시하였다.

주제어: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재난, 재난복구,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I. 서론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지역은 지역공동체를 일시적으로 혹은 영원히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양기근, 2011: 73-96). 특히 최근의 재난은 대형화되고 그 피해규모는 커다란 인명피해와 함께 재산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역경제와 지역주민의 생활터전 자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미 우리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를 통해 재난이 지역에 가져올 수 있는 피해의 다양성, 즉 생태계 피해, 생활환경 피해, 재산 및 경제적 피해 등 기본적인 삶 자체를 영위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험한 바 있다. 이러한 재난피해의 복구는 피해조사를 통한 보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해당지역의 생활안정화 및 재난에 강한 사회로의 탈바꿈을 과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재난 피해로 인한 지역의 공동체 회복과 재난복구를 위한 다양한 연구들(양기근, 2009; 최희천, 2010; 양기근, 2011; 김소남, 2012; 네모토, 2013)이 나타나고 있으나 재해복구정책의 제도적 틀 안에서의 개선과제, 사회자본과 재난복원력¹⁾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대안 모델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만, 이 가운데 네모토(2013)는 동일본 대지진 시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과 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김소남(2012)은 1970년대 원주지역 재해대책사업위원회의 장기구조사업으로서 신용협동조합 운동을 재조명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이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델로서 각광받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도 사회적 기업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래 사회적 기업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 시대의 장기화 속에서 각 국가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동력 마련을 고심하는 가운데 최근 부각되기 시작한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 모델의 하나이다. 사회적 기업의 역사가 깊고 활성화 되어 있는 유럽국가들에 비하면 한국의 경우 아직 그 수나 운

1) 양기근(2011)은 재난 복원력이 최근 재난 연구에서 새로운 문화처럼 다루어질 만큼 국내의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방안으로서 AHP분석을 통해 경제적 차원의 복원력을 갖추기 위해 고용창출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영 면에서는 미흡하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모델 도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의 사회적 문제해결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제주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최영출, 2012: 44) 시점이다. 특히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정부가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서비스와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7월 1일 사회적기업육성법이 개정되면서 활발하게 운영되어 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목적으로서 지역문제 해결 차원에서 재난피해로 인한 지역공동체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복구지원정책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적용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의 도입배경 및 유형, 한국의 사회적 기업 정책의 특징과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태안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피해지역에서 나타난 재난피해의 결과와 양상, 그리고 복구과정의 이슈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모델, 특히 사회적 기업²⁾의 적용을 통한 재난피해지역의 지역공동체 회복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경제의 등장 배경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는 근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시장의 폐해를 시정하는 대안적인 경제활동으로서 등장한 개념이다(신명호, 2009: 21).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1990년대 전후에 활동하던 프랑스의 경제사상가인 샬르 지드인데, 그는 자본주의가 진행되면서 시장 경제가 유발하는 갖가지 사회적 위험에 대해 노동자들의 집단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믿었고 시장경제를 실용적 개량주의의 관점에서 보다 사회적(social)이고 공평한(equitable) 경제체제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이러한 개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김경희, 2013: 130). 이후 1980년대부터 ‘사회적 경제’ 개념은 프랑스로부터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기 시작하였고, 1989년 유럽위원회는 사회적 경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사회적 경제 개념 정의를 채택하였다(Roelants, 2002; 신명호, 2009: 15 재인용). 당시 유럽위원회는 사회적 경제를 ‘공동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로 구성된 이해당사자 경제(stakeholder economy)의 일부로서, 중요한 경제행위자로서,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재단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유럽의 다양한 연구들은 사회적 경제를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이에 ① 서술적인 법적 정의, ② 그것의 연합적이고 기업가적 구성요소들을 연계하고 구성원과 경제적 활동의 이중적인 관계를 다루는 규정들에 초점을 둔 공식적

2) 본 연구에서 사회적 경제 모델 가운데 사회적 기업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는 이유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 모델에 대비하여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의 통합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역문제 해결로 지역의 자생적인 문제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정의, ③이러한 형태의 기업 안에서 발견되는 가치에 기초한 규명적 정의, ④사회적 경제를 다원주의적이고 본질적인 부문의 새로운 사회경제적 조절 메커니즘으로 바라보는 실질적 정의 등의 네 가지 차원의 정의로 구분하였다(장원봉, 2006: 33).

이와 같이 민간부문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하여 국가에 의해 어느 정도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각 국가별로 연구되어 온 ‘사회적 경제’는 복지국가의 발전 이후 다소 쇠퇴하다가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 인 경제위기와 재정위기로 인한 복지국가의 후퇴, 사회주의의 몰락, 신자유주의적 처방의 실패 등을 경험하면서 실업과 빈곤문제 등 증폭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유럽 등에서 국가와 시장을 대신하여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과 빈곤문제, 고용과 복지, 지역개발의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다(신명호, 2009; 김경희, 2013: 131-132).

‘사회적 경제’ 용어는 각국의 연구자들에 의해 ‘제3섹터’, ‘비영리조직’, 혹은 ‘자원활동조직’ 등으로 이해되기도 하며, 그래서 어느 한 가지 개념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가별로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양상들을 포괄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있다(장원봉, 2006: 30-39). 그럼에도 한국의 경우는 생산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협동조합 등을 들 수 있고, 로컬푸드 단체의 경우 생산과 동시에 소비에도 참여하는 유형으로 사회적 경제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기업의 관계

1) 사회적 기업의 등장과 의의

전 세계적 인 경제위기와 재정위기, 그리고 이어진 실업과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경제로서 사회적 경제의 관심 증가와 함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경제의 한 영역으로서 산업사회의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시장기능의 실패와 정부기능의 실패를 시정·보완하기 위해 출현되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43-44). 그러나 사회적 기업의 등장 배경과 시기는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주로 비영리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서유럽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독자적인 경제영역을 형성하는 제3섹터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으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유럽식 사회적 경제에 포함되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등이 미국의 비영리조직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Campbell, 1999)고 보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특히 서유럽에서 사회적 경제의 한 영역으로 인식하려는 성향이 강한 특징이 있다. 이는 당초 사회적 경제에 뿌리를 두고 제3섹터에 대한 기반이 강했던 서유럽에서 복지국가의 위기와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등을 통해 실업문제에 대응하고 국가가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사

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윤의 일부를 이용하는 동시에 정부의 보조금, 지원금 등 공공지원의 지원을 받는 점에서 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운영적 측면에서 비영리 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자율성, 자발성, 그리고 독립성이 강하다. 반면에 민간기업의 의사결정방식과 달리 사회적 경제로서 협동조합과 같은 방식의 운영과 생산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도 다소 차이를 보이며, 일률적인 하나의 형태로 정의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도 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OECD(1999)는 사회적 기업을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되지만, 기업이 추구하는 주요 목적 이 이윤 창출 극대가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목표의 달성이며, 사회적 소외와 실업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민간 조직 또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 기업을 ‘비영리 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2) 한국의 사회적 기업 현황

한국은 사회적 기업을 제도화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3일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2007년 7월 1일 동법률을 시행한 이후로 2012년 8월까지 총 7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1차와 제2차, 제3차 및 제5차 등은 타 법률의 개정에 따른 개정이었으며, 제4차와 제6차, 그리고 제7차는 동 법률의 실질적인 내용개정으로 이 안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역할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

4차에 걸친 개정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2012.8.2)’은 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 기업의 형태,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치 및 역할에 시대적, 국가적 상황 요구에 맞추어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 내용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법 제2조 제1호에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면서 지역사회 공헌을 그 범위로 확대하였다(제6차). 둘째, 동법 제5조2의 ‘시도별 사회적기업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신설하여 제5조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보다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차). 셋째, 동법 제6조 ‘실태조사’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 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제4차). 넷째, 동법 제7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조항으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제4차). 다섯째, 동법 제8조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절차’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유형으로서 민법 상의 법인·조합 및 상법에 따른 회사 이외에 합자조합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제4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섯째, 동법 제10조의 2의 ‘교육훈련 지원 등’을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 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사회적 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차). 일곱째, 동법 제12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 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다(제6차). 여덟째, 동법 제20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과 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인증업무, 교육훈련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차). 또한 제20조 5~8의 항을 신설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 관련 국제교류협력, 기타 법령에 의해 위탁받은 사회적 기업 관련 사업을 및 그 세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8차).

그러나 동법 시행 후 6년이 경과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적 기업은 인증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 지역개발, 돌봄사업, 녹색에너지, 문화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어 고용노동부라는 단일 부서에서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희수, 2011: 57-72)이 일면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중앙정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은 고용노동부 중심에서 범 부처로 확산되고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면서 혼재된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아울러 다양한 민·관 지원을 연계하여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려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

3) 정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사회적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거하여 교육훈련 지원(제10조), 시설비 등의 지원(제11조), 공공기관 우선구매(제12조),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제13조), 인건비, 운영경비 등의 재정지원(제14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한 행정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³⁾.

(1) 행정 및 경영지원 사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거하여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판로개척, 프로보노, 네트워크 구축, 민간자원연계, 국제협력, 연계지원, 사회적기업의날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컨설팅은 (예비)사회적 기업의 역량강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로서 기초컨설팅과 전

3) 본 절은 저자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를 위해 재구성하였음을 밝힘.

문컨설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기초컨설팅은 경영코칭을 통해 인사·노무·회계 등 기업의 기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최대 300백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전문컨설팅은 경영과제 해결 및 자립가능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자부담을 포함하여 5년간 총 5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둘째, 공공기관 우선구매는 사회적 기업의 시장 확대 및 판로개척을 위해 공공시장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기업의 시장개척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적 기업 상품의 소비 촉진을 위한 윤리적 소비 시장 진작 및 홍보를 내용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회적 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공공구매를 통합 지원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회적 기업 제품 정보 제공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기업 제품에 대한 접근성·구매 편의성을 제공하는 한편, 공공시장의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구매 기초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판로개척을 위해서는 ①공공기관 및 일반 소비자들이 사회적 기업 생산품 및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접점 구축 및 확대, ②사회적 기업 생산품의 대국민 인지도 및 인식을 제고, ③사회적 기업 생산품의 실제적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제품소비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토대 마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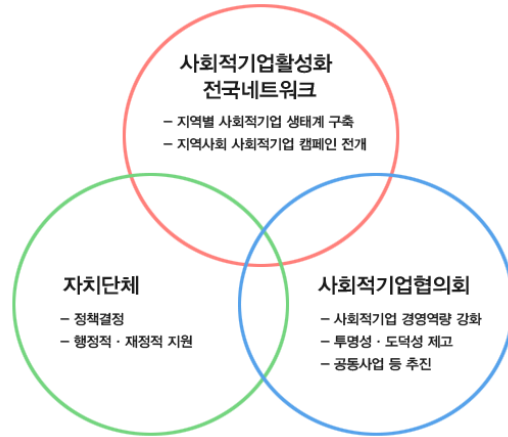
넷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의 수요를 발굴하고, 이들을 전문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성공적인 경영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 관리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적 기업 육성의 정책수단을 마련하고자 프로보노를 실시하고 있다. 프로보노(Pro Bono)란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의 라틴어 약어로서 주로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성을 자발적이고 대가 없이 공공(사회)를 위해 봉사(public service)하는 일을 표현한다. 이러한 프로보노의 종류로는 경영자문 및 컨설팅, 교육 및 워크숍, 온라인 자문, 파견근무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프로보노 신청절차

※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다섯째,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는 사회적 기업과 정부와의 정책협력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기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1년 12월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가 민관협의체 형태로 출범하면서 주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림 2〉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추진 주요사업

※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이 외에도 국제협력 사업으로서 국제포럼 SELF Asia(Social Enterprise Leaders Forum in Asia)가 운영 중에 있으며, 해외 선진 사회적 기업 및 유관기관 정책연구 연수 등을 통한 우수사례의 소개 및 정책방안 발굴 등을 모색하고 있다.

(2) 재정지원 사업

2012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 관련 예산은 1,760억원이 책정되었었으며, 이 가운데 인건비 비중이 70%로 가장 높았다. 정부의 인건비 지원은 사회적 기업의 경우 2년, 예비 사회적 기업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초기 사회적 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다른 기업들과의 동등한 시장경쟁력을 갖고 정착하기 위한 지원정책인 측면이 강하다(박수경·장동현, 2013: 96). 그러나 최근 한국 정부는 2013년 이후 직접적 인건비 지원보다는 경영·판로·금융지원 등의 간접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들은 연계지원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이루어진다(www.socialenterprise.or.kr).

첫째,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이루어지는 인건비 지원으로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주부담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급 방식은 연차별 차등 지원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의 경우 1년차 100%, 2년차 90%를 지원하며, 사회적 기업의 경우는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를 지원하고 있다.

둘째,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의 초기 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하여 지속·발전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도별 차등 지원을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기업 당 3인(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은 2인)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예비 사회적 기업은 기업 당 1인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

원한다. 다만, 이에 따른 기업의 자부담율을 년차별로 차등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브랜드(로고)·기술개발 등 R&D 비용을 포함하여 사회적 기업의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춘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한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 기업은 1억, 예비 사회적 기업 5천만원 이내에서 이루어지며, 사업참여기업의 최대 지원기간은 5년으로 그 기간 중 최대 지원금액은 3억이다.

넷째, 사회적 기업의 창업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별도의 금융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미소금융재단의 소액자금 대출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곤란하나,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기업을 발굴·지원,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저리의 대출방식으로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 ③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회적 기업에 특화된 전용 보증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확대⁴⁾, ④신용보증기금의 나눔보증 기금으로 정책성 특례보증제도로 고용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세제지원이다. 한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에 의거하여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4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조항을 설치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부금을 인정하여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료의 지원이다. 한국은 2010년부터 사회적 기업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대상 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기업 대표자, 임원을 제외한 유급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3. 사회적 경제 유형과의 사회적 기업의 비교

1) 예비 사회적 기업

한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일반 국민들의 사회서비스 요구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시장 친화적인 사회적 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주지하고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지역사회 공헌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을 2010년에 실시하면서,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였다(장우진, 2011: 898). 각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정부부처별 정책에 기초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⁵⁾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

4) 예비 사회적 기업은 지원대상이 아님.

회적 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인증조건보다 완화된 조건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예비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제정하는 '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규칙'이나 정부부처의 정책지원방침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해당 지역에 정주하고 있는 기업체 또는 정부부처의 소관 분야 기업체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 받은 예비 사회적 기업은 최장 2년동안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모태펀드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한 수익구조 마련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구비서류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2) 마을기업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문화·자연환경 등)을 활용,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안전행정부, 2013). 마을기업은 영국에서 시작하고 일본에서 발달하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유사한 개념이다.

현대에 들어 글로벌 경제와 로컬 경제의 양립과 균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현상이 더 이상 정부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졌다. 지역경제의 침체와 지역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생활자 공통의 이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역사회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사회의 기능을 재생시키고 공통의 이익을 만들어 내는 구체적인 방식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이다(김재현, 2010: 1-2). 한국은 1980년대 관광농원사업으로 농촌관광 정책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1990년대까지를 정부주도의 개별 단위 정책기로, 2000년 이후를 마을 단위 정책기로 구분 지을 수 있으며, 현재는 정부주도의 마을 단위 정책에서 점차 그 권한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으로 확대되는 시기라 규정할 수 있다(고선영, 2006: 38). 2007년 호소오치 노부타카의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한국에 번역 소개되면서 일반화되기 시작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2010년 현 지방정부 시기에 들어 지역공동체 단위의 생활형 일자리 창출을 모토로 한 생활밀착형 지방자치를 구축하면서 '지역성'을 강조하는 '마을기업'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지속적인 경제위기 상황의 비상대책으로 2009년부터 실시된 희망근로사업⁵⁾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지역의 자원을 활용, 안정적인 일자리·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마을기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2009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시범도입을 보고로 시작된 마을기업은 2010년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연두업무 보고서에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추진'에 대한 계획 발표를 통해 16개 시·도 184개 단체를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은 1,511개의 지역일자리

5) 인증절차와 지원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을 구분하지 않음을 밝힌다.

6) 이전 공공근로와 유사한 형태로 명칭에 차이가 있음.

창출하고, 43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가져왔으며, 2011년 행정안전부는 500개의 마을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이 ‘마을기업’으로 정식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2013년도 말까지 정부는 총 1,000개의 마을기업육성을 계획하고, 이를 통해 5,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육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마을 중심의 소규모 공동체와 지역 NPO 등이며, 국비 50%, 지방비 50%의 예산으로 1년차 마을기업 5,000만원, 2년차 마을기업 3,0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www.mospa.go.kr). 특히 대상층은 마을 중심의 소규모 공동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 영농법인, 복지관 내 부설 사업단으로 시작하여 일정한 고용효과와 공동체 성격을 지니고 있는 단체, 문화·예술인들의 연합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법에 따라 조직의 형태를 확실하게 유지할 해야 되는 사회적 기업과는 다르게 마을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아도 되며, 공동체 운영에 있어서도 내부 구성원들의 합의와 도출을 이끌어 내는 회의 체계는 있으나 공동의 의사결정구조라든가 내부 정관 등의 구비도 미약하다. 뿐만 아니라 내부 규정이 있더라도 복지관과 연계된 마을기업의 경우 복지관 내부 규정을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정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들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거나 유도 받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마을기업에 대해 법적 지원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의 유도를 통해 보다 안정적 지원체계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3)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자유롭게 가입, 탈퇴할 수 있고 사유재산과 경제적 이익을 부인하지 않는 점에서 자본주의적 요소가 강한 반면, 출자금에 상관없이 1인 1표의 평등한 의결권, 경쟁과 대립의 피해를 완화하고 비영리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자산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와 차이가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동의 경제적·사회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은 2012년 12월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⁷⁾ 이전까지 개별 협동조합법(농협법, 신협법, 생협법, 중소기업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특정분야 8개 특별법)에 묶여 법으로 제정된 유형의 협동조합만 설립 가능하였으며, 이 또한 인가조건을 충족하기 까다로운 측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협동경제 영역의 많은 기업이 운영은 협동조합 방식이되 법인격은 주식회

7)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배경에는 2009년 UN이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정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협동조합연맹(ICA)와 함께 각국의 협동조합법제를 협동조합기본법 체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데 따른 입법조치이기도 하다.

사, 유한회사, 개인회사로 유지했다.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노동, 복지, 주택, 서비스 등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5인 이상이 모이면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회적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근거도 마련되어 협동조합의 설립 및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진출하는 예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송인방, 2013: 372-373).

또한 협동조합기본법 신설에 따라 이전과 달리 주무부처를 기획재정부로 단일 창구화함으로써 지원 및 관리의 통일을 기하게 하였으며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의 틀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업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예비사회적기업, 농어촌공동체, 마을기업 등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모델들에 대해 중국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는 논의가 도입 초기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2012년 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최근의 논의는 협동조합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은 공적자금과 행정적 지원을 통해 초기 설립과정에서 지역사회 공헌주체로 성장, 정착하기까지 제도적 지원의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재산 및 경제적 피해가 큰 재난피해지역에서 피해주민들의 장기적인 생활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사회적 기업 육성과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이후, 현재까지의 사회적 기업의 쟁점과 제도적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⁸⁾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정책의 특징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난복구 지역의 위기 극복방안으로써 연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연구의 경향은 크게 도입 초기에는 ①사회적 기업의 유용성과 가능성, ②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사회적 참여 유인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며, 현재 과도기적 단계의 연구로는 ③ 사회적 기업의 정착 및 지속가능성, 그리고 ④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의 개선과제와 사회적 기여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유용성과 가능성에 대한 연구들로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박선화(2009)는 2007년 인증 사회적 기업의 성과 분석을 통해 사회적 기업들이 인증 기준보다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 외부의 재정적 지원이 성장의 절대적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지역밀착형의 사회적 벤처로써 이해해야 하며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정아윤(2008)은 자활공동체의 사회적 기업으로의 발전가능성 연구를 통해 취약계층⁹⁾ 등을 위한 자활공동체 조직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8) 사회적기업연구의 전문저널로서 사회적기업연구, 사회적기업과 정책연구 저널의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고찰함.

9) 정아윤(2008)은 근로빈곤층 등을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음.

인식은 낮으나 사회적 기업으로 진출 시 사회적 일자리에 대비하여 시장활동 경험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사회적 기업 진출 조직으로 3년이상 경영유지를 한 조직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과 자립의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시장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조직의 성장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과 주민참여에 대한 연구이다. 이은애(2010)는 사회적 기업과 영리기업 간 파트너십에 대한 국내의 동향을 분석하여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창업지원 및 시장제공, 프랜차이즈, 아웃소싱, 현물기부, 연구 및 교육훈련 지원, 시민참여형 지역개발 사업, 대기업 주도형 사회적 기업 설립, 비영리조직과 기업사회공헌 협력형의 창업지원 사례를 구분하여 사회적 기업 설립 방안과 기업의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등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연구하였다. 한편, 조영복 외(2008)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를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사회적 기업의 목적성이 특정 집단의 이해보다는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를 위한 목적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런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의 재정자립성, 경영전문성 강화가 요구되며 사회적 기업의 성과와 홍보를 통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전환, 사회적 기업을 위한 자본시장(민간투자, 기금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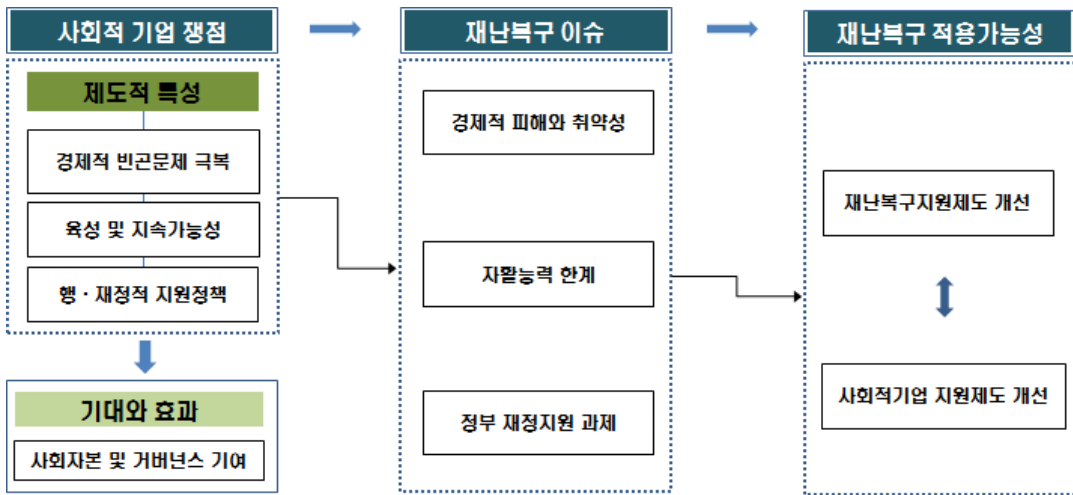
셋째, 사회적 기업의 정착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로 최종태외(2010)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자본시장의 육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지속적이 투자 재원공급을 위한 모태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옥정원·강승화(2010)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역량 및 전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부차원의 지원정책 중심으로 인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미흡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관련 단체들 간의 협력과 기반시설, 인프라 및 환경 구축이 향후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정착을 위한 중요한 선결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넷째, 사회적 기업의 지원정책의 방향과 개선과제로서 홍성우(2011)는 미국, 영국, 일본과 한국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의 제도적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법제도적 체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짧은 역사와 존재 형태의 한정성, 그리고 독특한 인증제도¹⁰⁾가 활동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김숙연(2013)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발전방안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기업활동을 지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부의 지원정책은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취약한 자립기반 업종에 한정되어 있는 사회적 기업의 업종 다양화를 고려해야 하며, 성장단계별로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요구된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김도균·정선기(2014)는 사회적 기업이 지역의 사회자본 확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사례분석함으로써 주민자치역량 강화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 기대를 강조하고 있다. 신국현·서순탁(2014)은 사회적 기업의 네트워크 형성이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영향을 주며, 직접적인 정부의 재정지원이 사회적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반면, 참여자의 참여의지가 사회적 기업의 민주적 운영에 영향을 미침을 실증하였다.

10)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임.

이 외에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들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공무원과 종사자의 인식 연구, 종사자 인식과 서비스 품질간의 관계, 판로지원, 조세특례 등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종사자 특성에 따른 고령자, 장애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기업 육성, 그리고 분야별 영역으로서 환경, 교육, 제조, 스포츠 등 분야에서의 진출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실증적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연구를 통해 나타나는 주요 쟁점을 토대로 재난피해지역의 재난복구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 적용가능성 탐색을 위한 본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연구 분석의 틀

III.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와 재난복구 이슈 분석

1. 사례 개요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는 2007년 12월 7일 오전 7시 충남 만리포 북서방 10km 해상에 서 삼성 T-5의 부선이 강풍에 와이어가 절단되면서 대산항으로 입항대기 중인 원유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충돌하면서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유출된 원유량은 78,906배럴(12,547kℓ)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중 규모면에서 가장 크며, 태안군 전체와 당진군, 서산시, 홍성군, 보령시, 서천군 일부 등 6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피해를 가져왔으며, 해당 주민과 지역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원유유출로 493개소, 5,656ha의 어장과 380개소, 4,627ha(피해율 82%)의 해면양식과 종묘생산 면적이 피해를 입었다. 또한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가로림만에서 안면도에 이르는 해안국립

공원의 다채로운 해안선과 기암절벽, 다양하고 독특한 식물군락을 이루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을 유지하던 주민이 많았으나, 해수욕장 15개소 400여ha와 해안 167km가 피해를 입었고 이 때문에 어업피해 뿐만 아니라 관광업 등의 비 수산분야도 큰 피해를 입었다. 2008년 4월 26일 현재 요식업, 숙박업, 판매대여업 등의 비 수산분야는 10,902건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 되었다(태안군청, 2008).

<표 1>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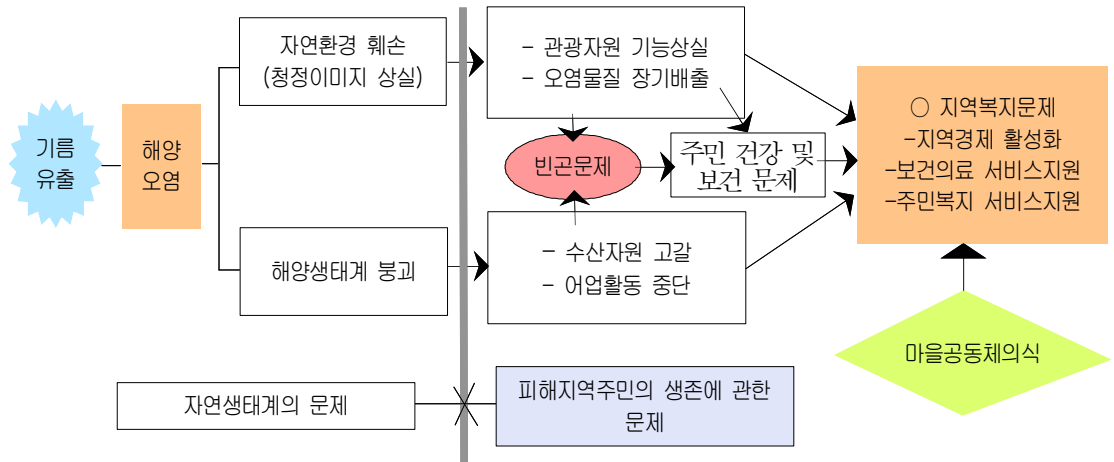
일시	사건
2007년 12월 6일	예인선, 크레인선, 인천항 출발
12월 7일	크레인선,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충돌(9차례) / 만리포, 천리포, 모항 등지에 기름띠 유입
12월 13일	미국 해양경비대 등 외국 기름방제 전문가 입국, 방제지원 / 서산수협 피해지역 어촌계 포함 '유류유출사고 피해대책위원회' 구성
12월 24일	예인선 선장 등 2명 구속, 삼성중공업 등 법인에 대한 수사 착수
2008년 1월 2일	태안해경, 검찰로 수사기록 송치
1월 10일-19일	주민 3명 잇따라 자살
1월 21일	검찰수사결과 발표, 악천후에서의 무리한 예인, 예인선 및 유조선 양측 신속한 대처 미흡 등이 원인 판정
2월 19일	태안군의회 연합대책위 구성을 위한 조례안 가결
2월 23일	태안특별법 국회 통과
4월 7일	'태안군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창립
2009년~2013년	특별법 총 5차 개정
2013년 1월	피해주민 중 761명 사망 확인
2013년 7월	특별법 시행(신속한 재판을 위한 특례규정 신설: 1심 2014년 5월내)

2. 재난피해에 따른 지역사회의 영향¹⁾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는 서해안 지역 일대에 생태계, 환경 피해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수산자원과 어장, 어업환경 등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여건을 상실한 지역주민들의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공동화 현상 및 지역경제 위축 등 지역사회 전체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피해의 영향 가운데 주민들의 삶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제적 차원의 피해와 주민생활 피해와 영향을 분석하였다.

11) 본 절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실시한 해양 유류유출사고의 중장기적 영향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의 피해조사 결과와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2008)가 실시한 「태안유류유출사고가 지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재구성하였음을 밝힘.



〈그림 4〉 지역사회에 미치는 유류유출사고의 영향

※ 자료: 김검훈(2008: 4).

1) 경제적 피해와 영향

(1) 피해현황 보고

정부는 보고서에서 이번 기름 유출 사고로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해안 300여km가 오염됐으며 101개 섬과 15개 해수욕장, 3만5천여ha에 이르는 양식장과 관련 시설 그리고 4만여 가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했다. 특별재난지대로 선포된 충남과 전남 중 충남에서는 총 3만여 가구가 피해를 겪었고, 지역별로는 태안이 1만1천688 가구, 서천이 7천720 가구, 보령이 4천924 가구, 서산이 3천331 가구, 당진이 1천666 가구, 홍성이 671 가구였다. 충남은 태안과 서산의 어장피해다. 피해 면적은 충남이 총 1만5천287ha로 서천이 4천539ha, 태안이 4천88ha, 보령이 2천484ha, 서산이 1천628ha, 홍성이 830ha, 당진이 1ha 순이었다. 전남의 경우 피해 가구는 총 8천400 가구로 신안이 3천672 가구, 영광이 3천158가구, 무안이 1천570 가구이며 총 피해 면적은 1만9천17ha로 신안이 1만7천8ha, 무안이 1천175ha, 영광이 834ha였다. 이밖에 전북 군산 등 기타 지역에서 1천600여 가구, 700ha 이상이 기름 유출로 피해를 봤다(정부보고서3.11). 기타 야생동물피해는 폐사된 것만 53마리(청둥오리 2, 상괭이 6, 바다쇠오리 6, 뿔논병아리 26, 가마우지 2, 논병아리 2, 기타 9)이고 구조된 것은 29마리(뿔논병아리 7, 꿩이갈매기 14, 논병아리 2, 기타 6)이다(2008.4.7 현재 잠정, 국가재난정보센터). 한편, 2008년 2월 15일 현재 태안군 재난관리과가 집계한 피해상황 집계(태안군의회 속기 록, 2008. 2. 15)에 따르면 어업피해는 해면양식장 4,646헥타, 종묘생산양식장 1.6헥타로 총 어장면적의 82%인 4,648헥타가 피해를 입었다. 피해신고 접수현황은 수산분야 10,782건, 비수산분야 8,302건으로 총 19,537건이 접수되었다. 분야별로 세부내역은 수산분야에서 맨손어업이 8,513건, 나잠어업 170건, 어선허가가 1,236건, 육상 해수 45건, 낚시구획이 91건, 면허어업이 609건, 기타가 118건이다. 비수산분야는 요식업 602건, 숙박업 1,424건, 판매대어업이 1,377건, 기타 2,226건, 구서식 신고가 2,673건이다(위평량, 2008 인용). 특히 희망제작

소 재난관리연구소(2008)의 연구조사에서 따르면 주민 스스로 사고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77.2%(149명)로 높게 나타나 주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영향은 더욱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피해추정과 보상문제

피해보상 과정에서 어업피해 등에 대한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 등은 사업장 확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추정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어업활동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하여는 그 피해를 보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신용승 외)이 2009년부터 2011년의 3년간에 걸쳐 피해조사를 실시한 배경에도 피해지역의 경우 어업 종사자의 소득구조에 대한 명확한 자료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점에서 이에 대한 피해추정방법과 보상방법에 대한 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수산 분야인 관광업에 대해서는 실제 재판과정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피해사실을 입증받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였다. 당초 2009년 5월 기준 비수산 부문 제한채권 신고건수는 총 15,578건이며, 금액으로는 약 1조 6,681억원으로 나타나며, 피해신청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태안군이었다. 특히 관광객 수요는 2006년 및 2007년 하계기간 중 태안군 해수욕장 방문객 수가 각각 1,400만명 및 1,300만명으로 집계되었으나, 2008년에는 32개 해수욕장 가운데 30개 해수욕장을 개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객 수는 전년동기 대비 약 66% 하락한 170만명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 710만명으로 다소 2008년 대비 31%로 증가하였으나 예년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신용승 외, 2009). 그러나 관광업을 하고 있는 피해주민들 가운데 연소득 2,400만원 미만의 사업자들은 세무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면세업자이거나 등록을 필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로 영업실적 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국제유류오염배상기금의 1차 조사에서 관광업 부문의 피해규모는 2008년 3월 14일 기준 720억 원~1240억 원, 2008년 10월 13일~17일 기준 1,980억 원~2,330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2011년 5월 9일 기준 관광 부문 피해신고 접수건수와 피해액은 각각 총 16,347건 및 3,867억 5천만 원이었다. 그러나 이 중 1,669건은 피해사실이 인정되어 163억 원의 배상금이 지급되었으나 4,787건의 피해신청은 심사과정에서 기각되었다(신용승 외, 2010).

특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811호, 2013. 5. 22)의 시행이 2013년 7월에서야 시행된 가운데, 각종 피해보상 신청 등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나 당진군 맨손어업민 4천579명에 대해 피해액을 '0원'으로 산정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당초 양식업자들이 22억원 피해를 입었다고 청구한 사정재판에서 이를 인정했음에도 재판에서 이를 번복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가 큰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2) 주민생활 피해와 영향

한국환경정책연구원(2009)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로 인한 주민 갈등구조 분석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역사회 갈등의 원인으로 생업 및 생활 변화에 따른 주민 간 이해상충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후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들의 갈등 해결에 대한 요구가 피해보상금의 지급과 지역주민의 단합에 맞춰져 있어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전략 수립이 최우선 선결과제로 제시되었다.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2008)의 조사에서도 사고로 인해 가족간 관계가 불편해졌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형평에 어긋난 보상, 피해정도의 차이, 태안재건 방법에 대한 의견차이, 지역주민들의 사고에 대한 과민반응 등으로 지역주민 간 관계가 불편해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의 같은 조사에서도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나빠졌다는 인식이 응답자의 91.2%(136명)를 차지할 만큼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문제를 가장 높은 생활문제로 꼽았다.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저하, 미래소득과 노후대비,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수준도 낮게 나타나 주민 개인의 건강 및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생활여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재난복구의 이슈와 쟁점

1) 경제적 피해와 취약성

서해안 지역 특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의 직접적 피해를 본 태안군의 경우 피해의 입증과 피해보상과정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역의 주요 경제적 생활기반이었던 어업과 관광업의 피해영향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2008년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의 현장조사¹²⁾ 초기 태안군 어촌계의 상당 수 마을이 인구유출이 발생하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경우 피해보상에 대한 의존도가 현격히 높은 상태에서 소득단절, 지출의 동결, 사업에 대한 소극적 태도 경향이 나타나는 등 지역사회의 경제활동 활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유입인구가 단절된 상태에서 무기력감과 불안감이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매출 위축에 따른 사업비용 증가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서비스 질 저하 등 사업불안정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정부가 초기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방제작업 인력으로 동원하는 과정에서는 외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경계와 불만을 표출하면서까지 방제작업비 등 공공근로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었으며, 지역 내부에서는 주민들 간에 공공근로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을 놓고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기존의 사업장을 폐업하겠다는 의견을 보이는 경우까지 나타났다.

12) 본 연구자가 조사원으로 동행하였으며(2008년 7월 14일, 8월 6일, 8월 11일, 8월 25일 중 2회 동행), 식당업, 숙박업, 양식업, 선주, 수산업을 하는 주민 6명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작성함.

2) 지역사회의 자활능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에 따른 지역경제의 위기 구조적 문제점 중 또 다른 하나는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려는 자활의지의 부재와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있다. 사고 직후 태안에서 주민 3명이 자살하는 사태가 일어났으며,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2008) 조사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장래 지역에 대한 발전 기대가 부정적 인식이 높은 가운데, 생계비의 계속지원과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에 대한 요구가 높을 뿐 다른 일자리 제공 등 다른 지원대책에 대한 요구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2〉 피해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

구분	빈도(명)	유효퍼센트(%)
생계비의 지속적 지원	47	31.8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	73	49.3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홍보	12	8.1
다른 일자리의 제공	7	4.7
건강 회복을 위한 보건 사업	2	1.4
기타	7	4.7
합계	148	100.0

※ 자료: 이재은 외(2008) 조사결과 인용.

특히 현장조사에서도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배상과 외부 손님의 유입, 경제적 지원, 상황에 대한 체념과 포기, 지속적인 어업환경 복원 노력, 단체행동 등 지역사회 내부적인 자구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외부 자원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었다.

3) 정부 재정지원 대한 기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응 중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높은 기대였다. 사고 초기부터 특별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합리적 보상과 지역사회 복구를 위한 지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특히 사고 발생 직후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5년 6개월여 기간이 소요되면서 5차에 걸친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진 가운데 개정과정은 이런 피해주민의 기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피해주민에 대한 손해보전 지원 외에 국제기금보상한도 초과 시 보사 특례,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으로서 농어업인,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우선 융자, 상환 유예 및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액 지원, 피해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 정부 재정지원의 주된 내용이 되고 있다.

2009년 5월 27일 1차 개정 당시 주된 이슈는 사고로 실질적 피해를 입었으나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의 마련이었다. 2차 개정에서는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해

확정된 금액을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으로 보며, 어업제한 등으로 인한 손해지원 조항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3·4차 개정 당시에는 대지급금의 지급 및 대부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이었으며, 최근의 5차 개정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위한 특례규정 신설로 2014년 5월까지 1심을 그리고 2015년까지 3심을 확정판결하도록 하는 사항을 담았다.

결과적으로 이는 정부 재정지원과 보상판결에 대한 주민 요구를 반영하는 결과로 피해주민들의 재정지원과 보상에 대한 의존 결과를 보여준다.

IV.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위기 극복방안

1. 재난피해지역의 위기 해결 과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의 경우 책임소재가 명확한 인적재난 사고이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광범위성, 보상과정 상에 나타나는 피해입증의 어려움과 재판의 장기화, 지역 환경 및 주요 경제적 자원 상실에 따른 주민생활의 불안 등이 총체적으로 나타난 사례이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와 같은 재난사고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과 정부 지원은 국가의 역할과 책무인 동시에 피해 원인제공자에게 있어서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피해복구과정에서 지역경제 악화, 지역공동체 해체 등 다양한 문제를 양산했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방안을 우선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지역 구성원이 상호협력 하에 지역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안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통한 문제해결은 유용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례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재난피해지역에서 나타나는 지역위기 현상은 지역공동체의 해체와 경제적 빈곤현상의 발생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헌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등으로 기존의 경제적 기반을 상실한 피해주민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노동, 생산 기회를 통해 개인과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도 그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해당 피해지역의 경우 피해주민들의 보상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오랜 시간을 요구하며, 실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지에 대하여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근로와 같은 한시적, 수동적 정책을 제공하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피해주민들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마련할 때 지역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2. 재난피해지역의 사회적 기업 적용 방안

재난피해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충격과 고통을 고려할 때, 주민 스스로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피해주민들에게 이루어지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복구비 및 피해조사 결과를 기초로 보상규정에 따른 지원이 전부이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때에 한해서 재난구호 등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재난 발생 시 정부지원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특별법과 같은 법률 제정이 없이는 대규모 재난 피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안정을 위한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기가 어려움을 의미한다. 더욱이 특별법 상에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와 방법, 내용 등을 상세히 다루기 어려운 만큼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피해보상 이상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 피해주민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지역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절차)는 사회적 기업인증을 위해 기업의 형태, 유급근로, 사회적기업육성법 목적에의 부합, 의사결정구조의 개방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수익구조에 관한 부분에서 영업활동 손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등을 포함,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등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증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경영, 재정, 민간자금조달(대출·융자 등),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난피해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재난피해지역에서의 피해주민 또는 지역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을 인증을 요구하는 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설치함으로써 인증요건을 완화시키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난복구 및 특별법 등이 정하는 지원방안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재난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에 이를 반영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재난피해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사회적 기업을 설립 시 피해주민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주민들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주민들 간에 상호협력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는 재난피해지역의 피해주민들이 생활안정을 위해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운영자금 대출 지원 제도인 미소금융재단의 소액자금 대출 제도 여건을 활용하거나 중소기업진흥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등을 인증 여부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을 통한 지역위기 극복이 지역사회의 재난에 대한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지원과 관리·감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들의 문제점으로 수익구조의 불안정성,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도 심화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종합적인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 차원에서 성과제고를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지원정책의 질적 제고와 사회적 기업을 통한 지역의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여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목적으로서 지역문제 해결 차원에서 재난피해로 인한 지역공동체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복구지원 정책으로서 사회적 기업 적용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의 도입배경 및 유형, 한국의 사회적 기업 정책의 특징과 내용을 우선 고찰하여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태안의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피해지역에서 나타난 재난피해의 결과와 양상, 그리고 복구과정의 이슈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모델, 특히 사회적 기업의 적용을 통한 재난피해지역의 지역공동체 회복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재난피해지역의 경우 피해주민들의 피해보상에 대한 의존도가 현격히 높은 상태에서 지역사회의 경제활동 활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위기극복을 위한 자활 노력이 없이 외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향,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경향을 보이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재난 이후의 지역위기 현상은 지역공동체의 해체와 경제적 빈곤현상의 발생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와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재난피해지역의 지역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에 재난피해지역에 대한 특례, 민간자금조달지원 정책 및 재난관리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에 부합하도록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함께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한계로는 재난피해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을 통한 성과사례를 실증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재난 발생 이후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재난피해주민들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과 이를 통해 자활 의지, 그리고 이를 위한 수요와 욕구를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재난피해지역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은 피해주민이 겪는 재난경험의 충격과 피해 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아직 과도기에 있어 그 성과가 미비한 만큼 재난피해지역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방안의 하나로써 고려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고선영. 2006. 장소자본에 기반 한 농촌체험마을의 유형화: 경기도 4개 마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 사회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용노동부. 2012. 제2차 사회적기업육성 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자료(2012.12).
- 곽선화. 2009. '07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사회적기업연구. 2(1): 37-65.
- 김겸훈. 2008.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이후 마을공동체의 복지욕구: 지역경제, 보건의료, 사회 복지 및 마을공동체갈등을 중심으로. 2008 재난관리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집(2008. 9. 6). 3-11.
- 김경희. 2013.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혁신의 가능성과 한계: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공 사회연구. 3(2): 126-150.
- 김도균, 정선거. 2014.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과 지역의 사회자본 확장. 2014 사회과학연구(충남대학교). 25(1): 281-306.
- 김소남. 2012. 1970년대 원주지역 재해대책사업위원회의 광산지역 장기구호사업 연구. 동방학지. 158: 387-441.
- 김숙연. 2013.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발전방안. 사회적기업과 정책연구. 2(2): 77-96.
- 김순양. 2011. 미국의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지역발전연구. 20(1): 277-311.
- 김용민, 제점숙, 이원범. 2012. 일본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고찰. 일본근대학연구. 35: 325-340.
- 김재현. 2010.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건국대학교.
- 김학실. 2011. 사회적 기업의 여성 친화적 분석. 지역발전연구. 20(1): 211-244.
- 김한표. 2010. 사회적기업의 거버넌스에 관한 주요국가 비교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네모토 마사쓰구. 2013. 재난복구시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과 지원방안: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의 공적자금과 민간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9(8): 1-20.
- 박수경·장동현. 2013. 한국 사회적기업의 지원체계 분석. 사회과학연구소. 24(4): 83-104.
- 박순열·홍덕화. 2010.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태안지역의 사회경제적 변동: 사회적 재난의 파편화와 사사회. 공간과사회. 34: 142-180.
- 배이화. 2007. 영국의 사회적 기업 육성방향과 전략. 국제사회보장동향. 봄호: 33-41.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서울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방안.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송인방. 2013.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소규모 창업 환경의 변화.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24(1): 365-402.
- 신국현, 서순탁. 사회적 기업의 거버넌스 심층 분석. 도시행정학보. 27(1): 317-343.
- 신명호. 2009. 한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75: 11-46.
- 신용승 외. 2011. 해양 유류유출사고의 중장기적 영향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III-1.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 신용승 외. 2011. 해양 유류유출사고의 중장기적 영향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III-2.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 신용승 외. 2010. 해양 유류유출사고의 중장기적 영향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II-1.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 신용승 외. 2010. 해양 유류유출사고의 중장기적 영향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II-2.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 신용승 외. 2009. 해양 유류유출사고의 중장기적 영향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I-1.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 신용승 외. 2009. 해양 유류유출사고의 중장기적 영향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I-2.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 안전행정부. 2013. 마을기업 육성추진지침. 서울: 안전행정부.
- 양기근. 2009.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5): 249-256.
- 양기근. 2011. 재난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 전략: AHP 기법을 이용한 우선순위 측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7(2): 73-96.
- 육정원·강승화. 2010.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역량 및 전망에 대한 연구: 부산지역 사회적기업 관련업체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2): 56-75.
- 위평량. 2008. 허베이스피리트호 해양오염과 지역 경제 활성화 연구: 태안군을 중심으로. 2008 재난관리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집(2008. 9. 6). 15-43.
- 이도희. 2012. 사회적기업 관련 제도 고찰. 경영경제연구. 35(1): 109-138.
- 이재은 외. 2008. 태안유류유출사고가 지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서울: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연구보고서.
- 이운정. 2010.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사회적 기업가 양성체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8): 341-348.
- 이은선. 2009. 사회적 기업의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영국, 미국, 한국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7(4): 363-397.
- 이은애. 2010. 기업사회공헌과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사례 및 쟁점. 사회과학연구. 3(1): 39-66.
- 장우진. 2011. 사회적 경제조직 운영 현황 및 시사점. 한국행정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장원봉. 2006.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나눔의 집.
- 장정순. 2007. 미국의 사회적 기업의 재원조달 방안. 한국비영리연구. 6(1): 273-318.
- 정선희. 2006. 성공하는 사회적 기업의 모든 것. 노동부.
- 정아윤(2008). 자활공동체의 사회적 기업으로의 발전가능성 연구: 구성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2): 91-116.
- 조상미, 김진숙, 강철희. 2011. 사회적 기업 정책특징 비교분석 연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2): 1-38.
- 조영복. 2008. 사회적 기업의 이해와 국내외 경영사례. 노동부.

- 조영복, 양용희, 김혜원. 2008.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사회적기업연구*. 1(2): 61-89.
- 최영출. 2013.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 연구. *한국비교정부학회보*. 17(1): 43-60.
- 최종태, 노희진, 조영복. 2010.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연구. *사회적기업연구*. 3(2): 20-37.
- 최희천. 2010.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의 이슈 분석: 복구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위기관리학회보*. 2(2): 52-68.
- 태안군청. 2008. 종합상황보고 5월1일자.
- 홍성우. 2011. 비교론적 관점에서의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특성. *사회적기업과 정책연구*. 1(1): 59-96.
-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2008.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태안 지역사회에 미친영향. 2008 태안국제환경포럼 초청세미나 자료집(2008.12.08).
- Cambell, M. 1999. *The Third System Employment and Local Development*. Policy Research Institute.
- Commission on European Communities. 2001. *Green Paper. Promoting a European Framework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russels.
- Defourny, Jacques and Marthe Nyssens. 2010. Conceptions of Social Enterprise and Social Entrepreneurship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Journal of Social Entrepreneurship*. 1(2): 32-53.
- Kerlin, J. A. 2006. Social Enterprise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Understanding and Learning from the Differences. *Voluntas*. 17: 247-263.
- OECD. 1999. *Social Enterprises*. OECD.
- OECD. 2006. 'OECD 국가의 사회적 기업과 시사점. OECD 대표부 보고서.
- Root Cause. 2009. *Government and Social Innovation: Existing State and Local Models*.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haebit.kr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안전행정부 www.mospa.go.kr
- 21세기자막단 21stcentury.co.kr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www.socialenterprise.or.kr
- <http://www.chiikisyakai-koyou.jp>

이주호: 충북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지방정부 재난관리 예산결정과정의 지대추구행태 분석: 기대-불일치 이론을 중심으로, 2010), 현재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관심분야는 재난관리, 갈등관리, 소방행정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지방정부 재난관리 예산과정의 지대추구 분석: 기대-성과 불일치 연구방법의 적용을 중심으로(2012)”, “부산지하철 안전문제 뉴스프레임 분석: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의 ‘네이버 뉴스캐스트’ 활용을 중심으로(2013)”,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이후의 갈등구조 분석: 협력 의지에 미치는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2013)” 등이 있으며, 주요저서로는 “소방행정학개론(2012), ”재해구호 복지론(2012)”이 있다(leejuho201@sunmoon.ac.kr).

배정환: 충북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도시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DEA기법에 의한 지방정부 성과를 중심으로, 2010), 현재 한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관심분야는 공공정책, 지역개발, 위기관리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의 지역R&D 효율화 방안(2010)”, “지역산업과 지방대학 협력 활성화연구(2011)”, “협력 상생을 위한 노사문화 형성 요인 연구(2012)” 등이 있으며, 주요저서로는 “지방행정론(2010)”, “지역경쟁력 강화와 로컬거버넌스(2006)”가 있다(baejh4637@naver.com).